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8. 8 선고 2024가단62168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7. 4.

판 결 선 고 2024. 8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9,515,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2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21. 12. 1.

주식회사 C(이하 C라 한다)에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1층 일부와 2층 사무실 약 82㎡를 임대한 사실, C의 차임 연체로 2023. 3. 3.경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C는 2023년 10월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한 사실, 한편 피고는 2023. 9. 17. 원고에게 C의 연체차임을 변제하기로 연대보증 한 사실, 보증금을 공제하면 2023년 6월부터 위 부동산이 인도된 2023년 10월까지 C가 연체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29,515,72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9,515,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2. 6.(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)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창현